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695070
등록번호	110111-6950706

상 호 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2021.05.14 변경 2021.05.20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파이낸셜뉴스에 게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파이낸셜뉴스와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 .
~~보통주식~~	~~60,000 주~~	~~금 300,000,000 원~~	. .
발행주식의 총수	~~686,288 주~~		2019.01.08 변경
~~보통주식~~	~~400,000 주~~		2019.01.08 등기
~~제1종종류주식~~	~~286,288 주~~	~~금 3,431,44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456,288 주		2019.01.11 변경
보통주식	400,000 주		2019.01.14 등기
제1종종류주식	1,456,288 주		
제2종종류주식	600,000 주	금 12,281,440,000 원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1.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부동산의 개발사업
3.부동산의 임대차
4.증권의 매매
5.금융기관에의 예치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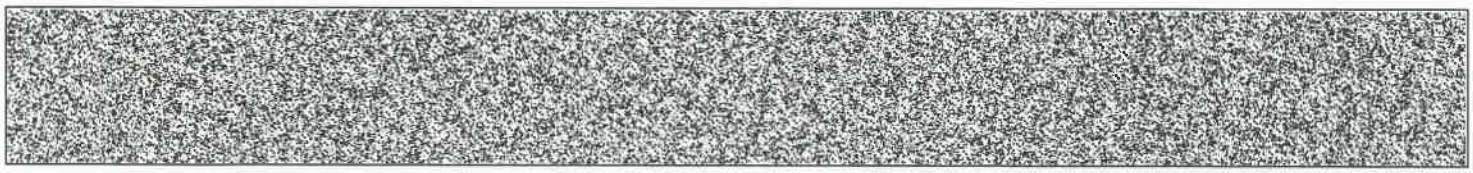

발행번호 11104020140010400251003220002710O5K91611K1I1K00101 1 **발급확인번호 0704-AAWW-YOKB** **발행일:2023/05/04**

등기번호	695070

6.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 관리 · 처분
7.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 관리 · 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영희 750103-*******
2021 년 12 월 10 일 중임 2021 년 12 월 15 일 등기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329동 1901호(원문동, 래미안슈르)
2021 년 12 월 10 일 중임 2021 년 12 월 15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
2021 년 12 월 10 일 중임 2021 년 12 월 15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
2021 년 12 월 10 일 중임 2021 년 12 월 15 일 등기

감사 이석연 690113-*******
2021 년 09 월 08 일 중임 2021 년 09 월 09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①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i)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며, (ii)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 사이에는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천만(20,000,000)주로 한다. 제1종 종류주식은 배당에 있어서는 누적적,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은 있는 것으로 한다.

③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현금으로 배당한다.

1.부투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회사의 배당가능한도액에서 매각차익(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액 및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말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종류주식 1주당 납입금액의 연 7.8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본 호에서 매각비용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 매각자문보수, 중개수수료, 법률자문보수, 회계자문보수, 회사가 체결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정의된 매각 관련 비용 기타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을 한도로, 일체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각 종류주식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때 해당 종류주식수 전체에 대한 내부수익률(IRR)이 7.81%에 달할 때까지 해당 부족분에 대한 금원. 단, 내부수익률(IRR) 계산시 기지급된 종류주식 배당금 및 유상감자로 인한 종류주식 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종류주식의 잔여 납입금액은 해당 이익배당결의일 현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④회사의 청산시 그 잔여재산의 분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

2.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배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내부수익률(IRR)이, 일체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각 종류주식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때 7.81%에 달할 때까지, 해당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

3.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의 납입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4.보통주식 납입금액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5.나머지 금액을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15% 보통주식에 85%의 비율로 각 분배하고, 제1

등기번호	695070

종 및 제2종 종류주식 사이의 분배는 각 종류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9 년 01 월 08 일 설정 2019 년 01 월 08 일 등기

제2종종류주식

①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i)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며, (ii)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 사이에는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일천만(10,000,000)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종 종류주식은 배당에 있어서는 누적적,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현금으로 배당한다.
1.부투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회사의 배당가능한도액에서 매각차익(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액 및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말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종류주식 1주당 납입금액의 연 7.8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본 호에서 매각비용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 매각자문보수, 중개수수료, 법률자문보수, 회계자문보수, 회사가 체결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정의된 매각 관련 비용 기타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을 한도로, 일체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각 종류주식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때 해당 종류주식수 전체에 대한 내부수익률(IRR)이 7.81%에 달할 때까지 해당 부족분에 대한 금원. 단, 내부수익률(IRR) 계산시 기지급된 종류주식 배당금 및 유상감자로 인한 종류주식 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종류주식의 잔여 납입금액은 해당 이익배당결의일 현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④회사의 청산시 그 잔여재산의 분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
2.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배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내부수익률(IRR)이, 일체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각 종류주식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을 때 7.81%에 달할 때까지, 해당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
3.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의 납입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4.보통주식 납입금액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5.나머지 금액을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에 15% 보통주식에 85%의 비율로 각 분배하고,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 사이의 분배는 각 종류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9 년 01 월 11 일 설정 2019 년 01 월 14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만 10 년
1.존립기간의 만료
2.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합병

등기번호	695070

4.파산
5.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7.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18 년 12 월 10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 년 12 월 10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3년 05월 0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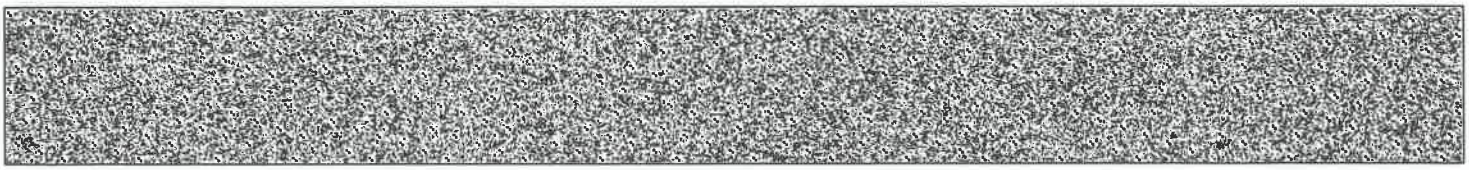

발행번호 11104020140010400251003220002710O5K91611K1I1K00101 1 **발급확인번호 0704-AAWW-YOKB** **발행일:2023/05/04**